

消費者被害補償規程

經濟企劃院은 1985年 12月31日 制定되어 1986年 2月1일부터 施行되어온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規程」의 내용에 있어 대폭 수정한 「消費者被害補償規程(案)」을 作成하여 1989年 7月14日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으로써 8月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를 소개코자 한다(편집자 註).

消費者被害補償規程

第1條(목적) 이 規程은 消費者保護法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와 事業者間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品目別로 消費者的 被害를 報償할 수 있는 基準을 定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原則) 物品을 購入하거나 用役을 提供 받은 消費者가 關聯賞品이나 用役의 品質, 價格, 去來條件 및 表示上의 不一致 등으로 正當한 不滿을 捧起한 때에는 製造業者, 販賣業者, 輸入業者 및 用役을 提供하는 者(以下 “事業者”라 한다)는 原則의으로 이 基準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하여야 한다.

第3條(補償) 이 規定에서 補償이라 함은 品質保證期間 또는 有效期間(이하 “品質保證期間”이라 한다) 以內에 製造·流通課程上 또는 用役의 利用課程에서 發生한 消費者的 被害에 대하여 消費者에게 行하는 修理·交換·還拂·賠償·解約·履行 등을 말한다.

第4條(報償責任者) ①消費者被害에 대한 補償은 物品을 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가 第1次의으로 報償責任을 지며 品質保證書 등에 報償責任者를 別도로 規定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第2項의 경우는 販賣業者는 關聯物品의 製造業

者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5條(品質保證書) ①事業者는 販賣時 消費者保證法 第8條에 規定하고 있는 事項이 包含된 品質保證에 관한 内容을 記載한 證書(以下 “品質保證書”라 한다)를 交付하거나 그 内容을 製品에 表示하고 이에 品質保證期間, 保證條件 및 部品保有期間을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輸入業者가 製品의 品質保證에 관한 内容을 表示함에 있어서는 한글 또는 한글을 병기하여 表示하여야 한다.

②第2項의 品質保證條件에는 최소한 이 基準이 定하고 있는 補償基準의 内容을 表示하여야 한다.

③事業者가 製品의 品質保證期間을 表示하지 않은 경우에는 消費者が 製品을 購入한 날로부터 1年(食品의 경우 流通期限)을 品質保證期間으로 본다.

④品質保證書에 販賣日字가 記載되어 있지 않거나 品質保證書의 未交付·紛失 등으로 정확한 販賣日字의 確認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製造日로부터 12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品質保證期間을 起算한다.

第6條(領收證 등의 效力) 品質保證書 또는 이와 유사한 證書가 發給되지 않은 品目의 경우 稅法規定에 의하여 發給되는 領收證 또는 關聯類似製

品의品質保證書도 第5條의品質保證書의效力을 가진다.

第7條(補償期限) 事業者は被害補償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内에補償與否 및 내용을消費者에게通報하여야 하며補償期限은通報日로부터 14日을經過할 수 있다.

第8條(費用負擔) ①無償修理의 경우에는修理에所要되는部品代 및原資材費用 등消費用을事業者が負擔한다.

②有償修理의 경우에는修理 및部品交換에所要된 순수부品代 및原資材費用에한하여消費者가負擔한다.

③被害人濟를目的으로物品의運搬費를負擔한消費者는이基準에추가하여그實費報償을要求할 수 있다.

第9條(價格還拂등) ①消費者가表示된價格을經過하여物品을購入했을 경우事業者は經過金額을還拂하여야 한다.

②消費者가中古製品을新製品價格으로購入한 경우그差額을還拂하거나당해新製품으로還拂해주어야 한다.

③廣告 또는表示와製品의內容이不一致한 경우消費者는購入日로부터30日以内에還拂을要求할 수 있다. 다만,事業者の訂正措置以後의購入者는還拂을require할 수 없다.

④製品의使用說明書內容이不充分하거나어려워消費者가被害人을입게된 경우事業者は製品을交換해주거나輸入價格을還拂하여야 한다.

⑤事業者が契約條件을不履行한 경우에는消費者는그契約을解除할 수 있으며消費者가契約解除에따른損害가발생한 때에는事業者에게被害人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⑥訪問販賣에 있어서詐欺·強迫에의하여契約을締結한 때에는그契約을解除할 수 있다.

第10條(交換 및還拂基準) ①事業者が製品의瑕疪등으로인하여消費者에게製品을交換하여줄 경우에는同一製品으로의交換을原則으로 한다.

②事業者が消費者에게價格을還拂하여줄경

우에는輸入價格還拂을原則으로하며,購入價格은證書또는領收證에記載된金額을基準으로한다.

③第2項의規定에불구하고證書또는領收證을保管하지않아購入價格에紛爭이있는경우에는적은金額을提示하는者가立證責任을지며,立證이不可能한 경우에는勸獎消費者價格으로還拂한다.

第11條(調整依賴) 事業者또는消費者(以下“當事者”라한다)가이規程에例示되지않은被害人類型에 대하여補償合議를얻지못하였을경우當事者は韓國消費者保護院에그調整을依賴할수있다.

第12條(司法的救濟) 이規程에依한消費者被害人은司法的救濟依賴를排除하지않는다.

第13條(品目 및補償基準) 對象品目 및品目別被害人賠償基準은 다음과 같다.

區分	品種	被害人類型	補償基準	備考
1.食料品 (18個 品種 106個 品目)	酪農製品類 우유, 분유, 연유, 버터, 발효유, 치즈, 이유 식 등	1)含量, 容量 不足 2)부패, 변질 3)流通期限 經過 4)異物混入 5)副作用 6)용기파손 등으로인 한상해 사고	當該製品 2배 교환 또는 購入價還拂 治療費, 經過 및 資金賠償	- 貨金은 被害人로인 하여 貨金 損害가發 生한것이 입증된때에 한하여金 額을 입증 할 수 없는 貨金은政 府勞質單 價를基準 으로 한다

